
「2024년 수소충전소 설치 및 연료비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24. 1. 15. 개정

환 경 부

목 차

1. 사업 개요	1
2.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 절차	4
3. 보조금의 예산안 신청	6
4.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7
5. 사후관리 및 보고	10

1. 사업 개요

가.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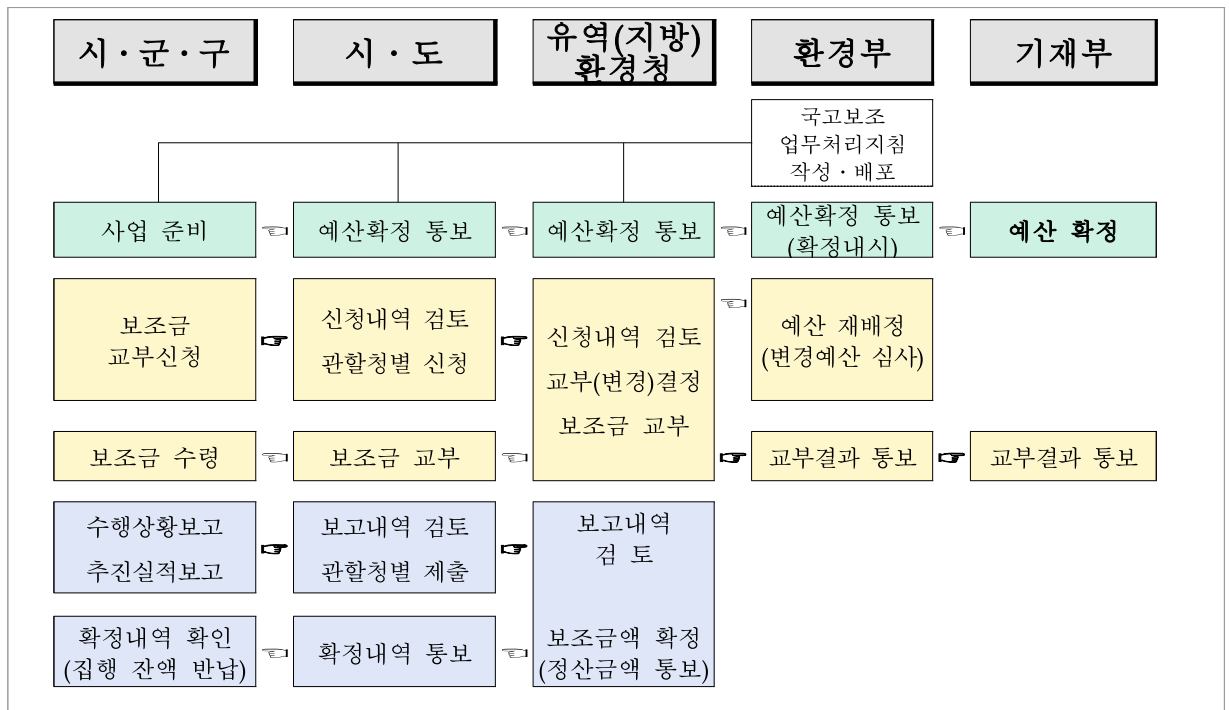
- 『대기환경보전법』 제47조(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 자동차의 운행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목적

- 수소충전소 설치 및 연료비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비를 보조함에 있어, 보조금의 내용과 보조금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정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다. 추진체계

-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민간자본보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소충전소 보조금 업무(예산·교부신청, 결정·취소, 실적보고,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요청
 - 민간보조 사업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위탁 수행



- 수소충전소 연료비 지원(민간경상보조)('21~'25년)
 - 수소충전소 연료비 보조금 업무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위탁 수행

라. 보조금 사업 및 보조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명	내역사업					수량 (개소)	재 정		민 간		비 고
							국고	지방비	국고	자부담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수소 충전소 설치	일반	계 속	2년	1기	0	70%	30%	-	-	2,700/개소
				2기	0	-	-	70%	30%	2,500/개소	
			① 신규	2년	1기	2	70%	30%	-	-	300/개소
				2기	2	-	-	70%	30%	2,500/개소	
			단 년	1기	0	70%	30%	-	-	3,000/개소	
					0	-	-	70%	30%		
					0	70%	30%	-	-	5,000/개소	
					2기	1	-	-	70%		30%
			증설		1	70%	30%	-	-	2,000/개소	
					2	-	-	70%	30%		
		특수	계 속	2년	1	70%	30%	-	-	5,400/개소	
					6	-	-	70%	30%	3,000/개소	
			① 신규	2년	1	70%	30%	-	-	600/개소	
					10	-	-	70%	30%	3,000/개소	
			단 년		3	70%	30%	-	-	6,000/개소	
					1	-	-	70%	30%		
			증설		0	70%	30%	-	-	2,500/개소	
					0	-	-	70%	30%		
		액 화	계 속	2년	0	70%	30%	-	-	9,000/개소	
					20	-	-	70%	30%	5,000/개소	
			① 신규	2년	0	70%	30%	-	-	1,000/개소	
					11	-	-	70%	30%	5,000/개소	
			단 년		1	70%	30%	-	-	10,000/개소	
					0	-	-	70%	30%		
			증설		0	70%	30%	-	-	4,000/개소	
					0	-	-	70%	30%		
		②연료비						총 적자의 80% 이내			

① 설치부지 확보 여부에 따라 단년도 또는 2차년도 사업비로 차등 지원

② 대상·일정·절차·방법 등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충전소 수량은 공모 수요, 지자체 여건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 변동 가능

마. 보조사업 수행기관

-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민간자본보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수소충전소 연료비 지원(민간경상보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바. 보조금 지급대상자

-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 일반·특수 수소충전소(액화 포함)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민간자본보조)
 - 일반·특수 수소충전소(액화 포함)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제외)
- 수소충전소 연료비 지원(민간경상보조)
 -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운영비가 적자인 충전소(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충전소와 연구목적, 비상업용은 지원 제외)

사.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목적 외 사용금지 등)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보조금을 법령의 규정, 교부결정의 내용 등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특히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보조사업 수행기관 및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함.

아.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의 재정 지원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시 아래 사항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시행하여야 함.

<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

구 분	선정 시 고려사항
정책 연계성	① 수소충전소 전략적 배치계획(2021-2025)을 고려한 부지 ② 해당 지역의 수소차 보급실적(계획)과 연계하여 구축 시급한 부지 ③ 그린수소 연계 등 친환경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적용 장려
설치 가속화	① 기존에 수행한 수소충전소 설치 실적이 부진(참여 설비제작사 포함)한 경우 선정·평가 시 감점 적용방안 검토·시행 ② 주요 설비·장비는 조기 수급이 가능하고, A/S 등 유지관리에 신속 대응이 가능할 것

	③ 부지 제약조건(의제 외 절차* 등) 사전 검토·준비 상황 및 세부계획에 대해 체크리스트 마련·평가(단년도 사업은 결격조건으로 활용 검토) * 행정적 절차 외에도 부지제공자와 지장물 처리 등 권리관계도 포함 ④ 해당 사업에 대한 관리인력(채용계획 포함) 운영 계획 적정성 평가 ⑤ 해당 사업 설계/시공에 즉시 착수 가능한 참여업체 선정 계획 평가 ⑥ 지역사회와의 소통·대응 계획 적정성 평가
투명한 사회구현	① 사업자 선정 입찰 등에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거나 사업계획상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선정 시 결격 조건으로 적용 또는 시정 ② 신청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감점 적용방안 검토·시행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수소충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시 수소의 수급 및 품질관리, 설비의 고장관리와 안전사고 대응체계가 포함된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시행하여야 함.
-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비상대응계획(별지 제1호 서식)을 보조사업 수행기관에 보고하고, 비상대응계획의 적정성을 승인받아야 함(구축시, 운영시 매년)

○ 수소충전소 연료비 지원

- 민간사업자*가 상업 운영하는 수소충전소 중 적자가 발생한 수소충전소 (연구목적, 비상업용은 지원 제외)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공기관 등 위탁 사업자 포함
-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보조사업 수행기관에 연료비 지원사업 신청시 비상대응계획을 제출하고, 비상대응계획의 적정성을 승인받아야 함

2.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 절차

가.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민간사업자 공개모집)

- 보조금 지급 대상 수소충전소 민간사업자 선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진행되며, 공개모집에 대한 일정·절차·방법 등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환경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민간사업자는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부지를 사전에 선정해야 함
- 부지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함
 - 수소충전소 저장시설(T/T) 등 설비의 설치가 가능한 충분한 부지의 확보
 - 설치 부지의 소유권 확보 또는 부지 소유자와의 부지 사용에 관한 사항 협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입지제한
 - 수소안전 등에 따른 지역주민 등의 민원 발생
 - 기타 수소충전소 구축에 필요한 사항 등
- 사업자 선정 공개모집에서는 다음의 각 사항을 평가
- 제안업체에 대한 경영상태, 신인도, 재무현황 등
 - 구축비용, 부지확보, 구축시기 등 충전소 구축의 타당성 등
 - 수소연료의 조달계획, 운영계획 등 충전소 운영의 적정성 등

나. 수소충전소 연료비 지원(공개모집)

- 수소충전소 연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대상·일정·절차·방법 등은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지원금액은 현재 수소연료 구입 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간 차액의 최대 70%로 산정하되, 지원액은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조정
 - 지원기준상 적자액의 80%가 35백만원을 초과하나, 충전량이 적어 연료구입비 지원액이 35백만원 보다 적을 경우에는 35백만원*을 지원(이 경우에도 총 적자의 80% 이하만 지원)

* 사업 개시 1년 이상 경과한 수소충전소는 반기별 지원액 산정금액이 35백만원의 50% 이상일 경우에만 35백만원 적용

- 지원금액은 전문 회계법인에서 관련 자료를 검증하여 충전소별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함

※ 산정단가 = 지원단가 × 수소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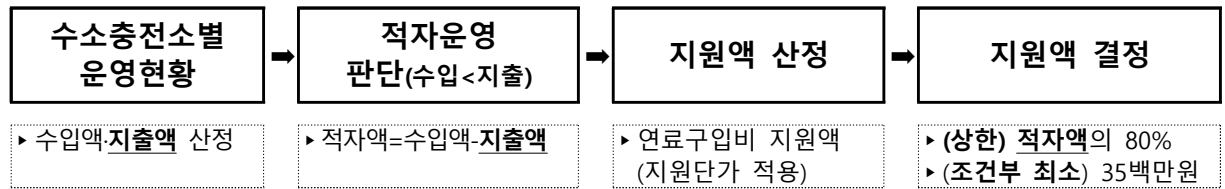
지원단가 = [연료구입단가 - 기준단가(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단가)] × 70%

기준단가 산출식: 수소구입단가 - [총 적자금액 / 수소구입량(kg)]

- 적자규모는 운영 수익금과 인정범위 내 지출항목*으로 파악하며 운영 실적 기간은 직전 반기를 적용함

* 인건비, 인건비성 대행비, 수소연료구입비, 수소생산용 원료 구입비, 공공요금, 유지보수비, 수수료, 운송비, 기타 재료비 등이며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연료비 지원사업 공모시 공지

< 연료비 지원액 산정 절차 >



3. 보조금 예산안 신청

가. 기본방향

- 보조사업 수행기관(지방자치단체)은 익년도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에 관한 보조금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고보조사업 신청서를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는 시·도를 거쳐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
- 사업 추진상황, 지방비 확보 가능성 및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안 신청
 - 계속사업은 사업진도, 예산집행실적 및 향후 집행전망 등을 엄격히 적용하여 신청
 - 신규사업은 사업의 시급성, 사업추진 여건 확보, 예산투자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
 - 수소충전소 설치지역의 주변지역 민원해소 여부, 부지확보 여부, 지방의회 동의 여부 등 고려하여 신청

나. 신청기한 및 신청서류(보조금법 제4조 및 제6조)

- 신청기한 : 시·군·구 → 시·도, 3월, 시·도 → 환경부, 4월
 - ※ 보조사업자는 환경부 및 기재부에 예산요구 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청기한 엄수
- 신청서류
 - 수소충전소 설치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 신청
 -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보완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각종 통계자료 등)를 첨부
 - 완공예정사업으로서 잔여사업비 전액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안 신청서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 실시설계 준공보고서 및 설계결과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
- 신청방법 : 서식별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후 문서로 제출

4.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가. 집행계획의 수립

- 보조사업 수행기관(지방자치단체)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연간 보조사업 수행 및 보조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전에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는 시·도를 거쳐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
 - 보조사업 대상 기관 선정 및 수요조사 계획
 - 보조사업 후 운영 실적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계획

나. 보조금의 교부신청

- 보조사업 수행기관(지방자치단체)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비보조사업 연간 계획서를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는 시·도를 거쳐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
- 보조금 수행기관은 보조금 지급대상기관으로부터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받아 보조사업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매 분기 시작 15일 전까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는 시·도를 거쳐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
 - 다만, 수소충전소의 원활한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사업 개시와 함께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보조금 지급 예산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잔금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 지급(선금 지급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름)

다. 보조금의 교부

- 교부결정(보조금법 제17조 및 제18조)
 - 보조사업 수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대하여 아래 사항 등을 검토한 후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부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 교부년도 이전 및 전 분기까지의 사업 집행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및 사업여건
- 다만, 수소충전소의 원활한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 교부결정의 통지(보조금법 제19조)
- 환경부장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은 교부조건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지자체, 환경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에 통보하며, 보조금은 집행실적 확인 등 사업추진 경과에 따라 필요 자금을 지급

라. 보조금의 교부조건

- 광역자치단체인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도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수소충전소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의무 운영기간 등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이 경우 조건에 대하여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마. 보조금의 집행

(1) 보조사업의 대상자 선정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수소충전소 민간자본보조사업·민간경상보조사업의 대상자를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공개모집 및 대상자 선정의 방법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2) 공통사항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 실적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업집행, 준공 및 정산처리하고, 보조금의 집행 잔액은 사업완료 후 국고에 반납 조치하여야 함

(3) 수소충전소 설치 국고보조금

○ 보조금 지원 대상

- 장비 설치공사, 배관공사, 전기공사, 건축 및 토목공사, 검사 및 인허가 설비, 튜브트레일러(T/T) 소요비용과 필수 부대 설치 비용* 일체로 하되, 신규 수소충전소는 저장수단**을 자체 보유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함

* 보조금 중 부지매입비, 자체 추가하는 시설은 보조금 집행대상에서 제외

** 압축기·펌프 전단 저장탱크(튜브트레일러 등)

○ 보조금 지원기준

종류별			사업 비용(천원)	비 고
일반수소 충전소	신규	1기	3,000,000	국비 70%, 지방비(또는 민간사업자) 30%
		2기	5,000,000	
	증설 1기		2,000,000	
특수수소충 전소	신규	2기	6,000,000	
		증설 1기	2,500,000	
액화수소충 전소	신규	4기	10,000,000	
		증설 2기	4,000,000	

※ (충전소 신규) 설치부지 확보 여부에 따라 단년도 또는 2개년도 사업비로 차등 지원

바.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이후에, 사정 변경으로 인해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환경부장관(민간보조)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지자체보조)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환경부장관(민간보조)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지자체보조)에게 반환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민간보조)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지자체보조)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이후 해당 보조사업 수행기관의 보조사업 수행여부를 평가한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5. 사후관리 및 보고

가.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 수소충전소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수소충전소 구축현황 및 구축 완료된 수소충전소의 운영 상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조사·점검하는 등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익월 10일까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별지 제6호 서식)하여야 함.
- 수소충전소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수소충전소가 신속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인·허가 협조, 지역주민 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등)를 적극 취해야 함.
- 지역주민 민원 발생, 인·허가 절차 지연, 충전설비의 문제 등 구축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유역(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조치방안을 마련해야 함
- 또한, 한국환경공단 충전정보시스템에 충전소의 위치 및 상태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 수행기관은 충전정보시스템에 충전기의 상태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는 통신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수소충전소 보조사업관리를 위해 현장점검, 기술검토 등을 지원·자문하는 '수소충전소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나.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보고(분기)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보조사업 집행 및 예산 집행실적(별지 제7호 서식)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 수행상황보고 검토결과에 따라 현지 집행점검 실시

다. 보조사업의 완료보고(정산)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 집행실적(별지 제5호 서식)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 집행실적 확인이 가능한 지출결의서 또는 예산지출 전산프로그램(e-호조 등) 출력물(원본대조확인), 충전소 설치 및 물품구매 계약서 등

- 수소충전소 연료비 지원: 집행실적 확인이 가능한 지출결의서 또는 예산지출 전산프로그램(e나라 도움 등) 출력물(원본대조확인) 등

부 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침 4.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마.(3)목의 보조금 지원 대상 후단 신규 수소충전소의 저장수단 자체 보유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흐름도. 끝.

[별지 서식]

1. 수소충전소 비상대응계획(별지 제1호 서식)
2.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수소충전소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4.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
5.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 집행실적 완료 보고(별지 제5호 서식)
6. 수소충전소 사업 사후관리 보고(별지 제6호 서식)
7.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 집행실적 분기 보고(별지 제7호 서식)

[붙임]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흐름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신청 및 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 보조금 신청서를 전년도 5.31까지 기획재정부 제출(환경부→기재부)

↓

보조금 예산 통지

- 전년도 9.15까지 지자체에 예산(안) 통보(환경부)

↓

- 국회 예산 확정 즉시 지자체, 기획재정부 및 행정자치부 통보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연도 1월, 교부신청 기한 및 관계서류 제출토록 지자체 통보(환경부)

↓

- 사업수행기관이 교부신청서(사업계획서 첨부)를 작성하여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추진의 타당성 여부, 예산집행시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배정시기 등 결정

↓

- 교부 결정시 사업수행기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 통보

보조금 집행 및 집행·실적보고

- 유역(지방)환경청의 교부결정 통보 후 사업수행기관은 충전소 설치 등 보조금 지급대상자에게 보조금 집행
- 수행상황은 사업수행기관이 분기(월)마다 유역(지방)환경청에 보고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는 보조사업 완료시, 회계연도 종료 시, 사업폐지 승인 시 사업수행기관이 유역(지방)환경청에 보고

수소충전소 비상대응계획

1. 수소충전소 정보

연번	상호명	용도	수소저장	충전용량	구축사 (소유)	운영사	상업운영개시
1	OO수소충전소	일반/특수/액화	액화/기체	000kg/h	(주)0000	(직영)0000 or (위탁)0000	'00.00.00 or '00.00.00(예정)
2							

2. 수소수급 현황(계획)

수급처	현황	운송수단	생산(지역)	유통사	계약거래량 (순도)	계약기간
주요 수급처1	현재/계획	배관	SPG(여수)	SPG	000kg/월 (99.999%)	'00.00.00 ~ '00.00.00
주요 수급처2						
비상 수급처1	현재/계획	튜브트레일러	현대제철(당진)	현대글로벌비스	000kg/월 (99.999%)	'00.00.00 ~ '00.00.00
비상 수급처2						

※ 복수의 수소 수급처 또는 비상 수급처를 반드시 확보할 것

3. 충전소 유지보수 관리 및 긴급 복구 계획

연번	부 분	기관명	유지보수 관리 및 긴급 복구 계획	계약금액	계약기간(년.월.일)
1	설비/건축/전기/시스템 등	JNK Heaters		무상 0년/유상 연000,000,000원	'00.00.00 ~ '00.00.00
2					

※ 정기점검, 설비고장, 사고 등으로 인한 충전소 가동 중단시 긴급 복구 계획 포함

4. 충전소 가동중단 시 분산 조치

연번	상호명	기관명	분산물량	협약일
1		JNK Heaters		
2				

※ 버스, 화물, 청소차 등 고정 수요가 있는 경우 인근 수소충전소에서 충전이 가능하도록 분산 계획을 작성

5. 비상연락망 및 유관기관 신고체계

- 비상연락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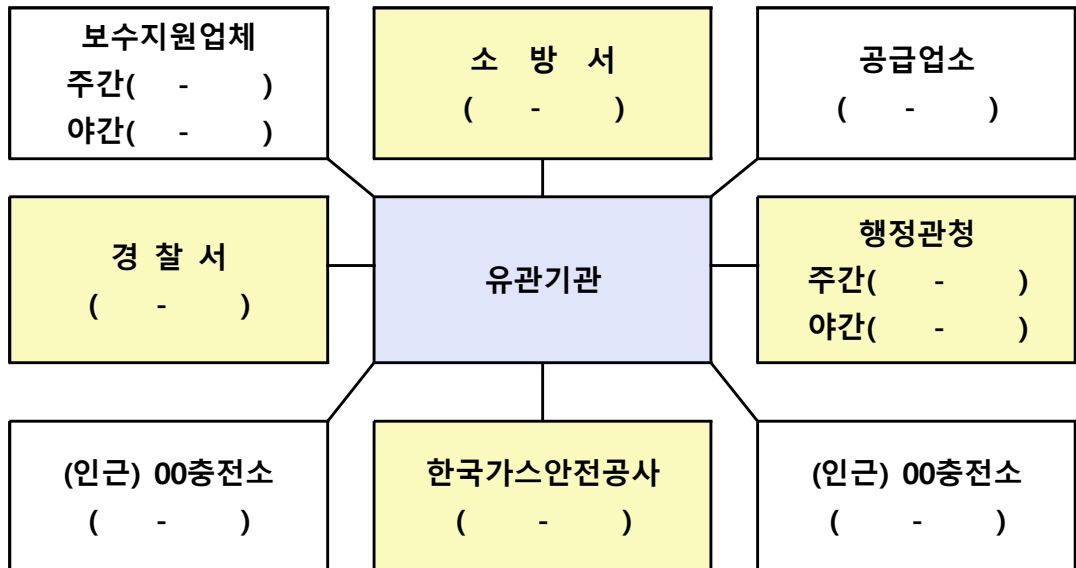
안전관리 총괄자	성명:
	전화:

안전관리 책임자	성명:
	전화:

안전관리원
성명:
전화:

충전원
성명:
전화:

- 유관기관



20 . . .

제출기관 : .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첨부]

수소충전소 보급사업 세부계획서

(작성자 : ○○시·도 ○○시·군 ○○○○과, 이름 ○○○, 연락처 000-000-0000)

1. 사업 개요

☐ 사업 목표

- 충전소 설치계획

충전 방식	년도					기존 충전소 설치 현황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설치 대수	설치 지점

2.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 소요예산 : 총 백만원

- 수소충전소 설치 소요예산 세부 산출근거

☐ 충전소 설치계획

-

※ 사업자 선정, 설치 부지 선정(주변경관 사진 첨부 및 부지확보 방안 등 작성), 계약체결, 설치 공사, 인·허가, 기대효과 등

3. 기타 고려사항

[별지 제3호 서식]

수소충전소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업명 : 수소충전소 사업

신청기관			
신청 내역	구 분		수소충전소 사업
	금년계획	금액	
		물량	
	금회신청	금액	
		물량	
사업 기간			
계좌번호, 은행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관인) OO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보조금 신청액 산출근거(구입계획서 첨부) 1부. 2. 지방비 확보 예산서 사본 1부 3. 사업추진 세부 일정 1부(월별 추진일정)			

(첨부)

2024년 사업계획(안)

I. 기본현황

☐ 사업자 :

☐ 법적근거

○

☐ 사업목적 및 내용

○ 목적 :

○ 내용 :

☐ 총사업비(사업기간) : 천원 (20○○ - 20○○, ○년)

☐ 보조금 보조율 :

II. 2023년도 수소충전소 사업 추진현황

☐ 일반현황

○ 사업기간 :

○ 사업내역 :

○ 소요사업비 :

☐ 2023년 사업추진 경과

○

☐ 수소충전소 관리실태

Ⅲ. 2023년도 예산 및 집행현황

☐ 국비 지원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환경부		보조사업자						
	예산액	지출액	사업자명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지출액 (원인행위)	이월액	불용액
							- (-)	-	-

※ 지출액은 실제 지출액으로 기재하고 () 원인행위 기준으로 기재

☐ 국비 지원예산 월별/분기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지출원인행위일	원인행위내용	원인행위금액	실제 지출액	비고
합계	-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국비교부일 :

※ 집행 부진사유 :

☐ 지방비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보조사업자						
	사업자명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지출액 (원인행위)	이월액	불용액
					- (-)	-	-

☐ 지방비 월별/분기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지출원인행위일	원인행위내용	원인행위금액	실제 지출액	비고
합계	-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지방비 교부일 : / 집행 부진사유 : :

IV. 2024년도 예산 및 집행계획

☐ 국비 지원예산 및 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환경부	보 조 사 업 자						
	예산액	사업자명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지출액 (원인행위)	이월액	불용액
						-	-	-

☐ 국비 지원예산 월별/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지출원인행위일	원인행위내용	원인행위금액	실제 지출액	비고
합계	-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지방비 예산 및 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보 조 사 업 자						
	사업자명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지출액 (원인행위)	이월액	불용액
					- (-)	-	-

☐ 지방비 월별/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지출원인행위일	원인행위내용	원인행위금액	실제 지출액	비고
합계	-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V. 수소충전소 사업 추진 자체평가

☐ 총괄평가

○

○

☐ 잘된 점

○

○

☐ 미흡한 점

○

○

VI. 향후계획

☐ 미흡한 점 해소중심으로

○

○

국 고 보조금 교 부 결 정 통 지 서

「2024년 ○○○○○○○○○」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보조 사업명 : ○○○○○○○○○○ 사업
- ☐ 보조 사업자 : ○○○○○○○○○○
- ☐ 교 부 목 적 : ○○○○○○○○ 지원
- ☐ 예 산 과 목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투자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 교부결정내역

세목	시·도	예산액	기교부결정액	금회교부결정액	교부잔액
330-03	합계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유역(지방)환경청장)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법」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장(이하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3.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환경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4.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5. 환경부가 인정한 경우 이외에는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 집행실적 완료 보고

1. 사업명 : 수소충전소 사업

2. 추진실적

☐ 보급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총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수소충전소										

☐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계	수소전기자동차	수소충전소
전년도 이월액				
금년 보조금 교부액				
보조금 예산현액				
집행액 누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월액				
불용액				

3. 첨부서류

- 가. 예산집행 증빙서류
- 나.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관련 서류
- 다. 수소충전소 설치기관 현황
- 라. 기타 사업집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 . . .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수소충전소 사업 사후관리 보고

1. 사업명 : 수소충전소 사업(지자체명,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 구축 추진 현황

사업명	추진현황	향후계획	완료예정일

3. 운영 현황

설치 기관명	압력	생산방식	월간 충전량	고장 등 특이사항 발생내역 및 조치사항

4. 특이사항 등

○

○

20 . . .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 집행실적 분기 보고

(/4분기)

1. 사업명 : 수소충전소 사업

2. 추진사항

☐ 보급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총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수소충전소										

☐ 국고보조금 집행실적(/4분기)

(단위 : 천원)

구 분		수소충전소
전년도 이월액		
금년 보조금 교부액		
보조금 예산현액		
집행액 누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월액		
불용액		

3. 특기사항(부진사유 등)

○

○

20 . . .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